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98
----------	------

2026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 5. 26.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6. 5. 27.
4. 상정일자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6. 6.19)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6. 6.19)
 - 승인

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국장 박경환)

- 안건번호 제3698호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0개 기금 28개 계정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9조 6,3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195억원(17.3%) 증가하였음
 - 2025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액은 3조 4,732억원으로 타 회계 전입금 8,738억원, 예수금 1조 6,973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764억원 등이며
 - 기금 사용액은 2조 537억원으로 융자성·비융자성 사업비 1조 994억원, 예수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293억원 등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과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은 서울특별시장이 '26년 5월 26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기금결산 관련 검토

1. 기금결산 총괄 설명 관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정례회중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제출된 기금결산 승인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2)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①기금결산 총괄설명, ②기금 수입·지출결산, ③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수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6. 1), p.189~198

- 기금결산 총괄설명 (p.191)
- 기금 수입·지출결산 (p.194)
-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p.197)

- '25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20개 기금, 28개 계정을 운용하여 당해연도말 9조 6,366억 9,900만원을 조성한 것으로³⁾ '24회계연도말 조성액(8조 2,171억 5,800만원)보다 1조 4,195억 4,1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3-1〉 2025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 = A + B)
	계 (B = C - D)	조성액 (C)	사용액 (D)	
8,217,158	1,419,541	3,473,227	2,053,686	9,636,699

- 기금에 대한 결산결과, 3조 4,732억 2,700만원을 조성하고, 2조 536억 8,600만원을 사용함으로써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조 4,195억 4,100만원 증가한 바,
 - 수입과목중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원금회수를 제외한 ①전입금 8,738억 4,700만원, ②예수금 1조 6,973억 1,300만원, ③용자금회수 2,764억 3,700만원 등을 합한 당해연도 수입(당해연도 조성액) 3조 4,732억 2,700만원에 대해,
 - 지출과목중 예치금과 예탁금을 제외한 ①비용자성사업비 8,535억 2,400만원, ②용자성사업비 2,458억 9,100만원, ③차입금원리금상환 6,796억 1,400만원 등을 합한 당해연도 지출(당해연도 사용액) 2조 536억 8,600만원을 차감하여 연도말 기금 조성액 증감분을 산출한 것임

3)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시금고 예치 또는 타 회계·기금에 예탁되어 있음

〈표 3-2〉 당해연도 기금운용 현황 (수입 및 지출)

(단위 : 백만원)

수입 (당해연도 조성액)			지출 (당해연도 사용액)			
소	계	3,473,227	소	계	2,053,686	
전	입	금	873,847	비	용 자 성 사 업 비	853,524
예	수	금	1,697,313	용	자 성 사 업 비	245,891
보	조	금	5,698	차	입금원리금상환	679,614
용	자	금 회 수	276,437	기	타 지 출	19,809
차	입	금	339,500	예	수금원리금상환	249,665
이	자	수 입	149,011	인	력 운 영 비	4,741
기	타	수 입	131,417	기	본 경 비	43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중 기금운용명세서 (p.1523~1524)

〈표 3-3〉 2025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계 (A=B+C+D)	시금고 예치금 (B)	타 회계 및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예탁금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타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D)
계	9,636,699	1,615,189	1,132,731	6,888,77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733,088	259,910	584,400	6,888,778
통합계정 ^{주1)}	6,993,701	104,923	-	6,888,778
재정안정화계정 ^{주2)}	739,386	154,986	584,400	-
중소기업육성기금	253,731	213,731	40,000	-
용자계정	155,671	155,671	-	-
투자계정	36,191	36,191	-	-
사회적경제계정	61,868	21,868	40,000	-
식품진흥기금	61,857	9,857	52,000	-
기후대응기금	40,490	36,490	4,000	-
도로굴착복구기금	34,565	34,565	-	-
양성평등가족기금	25,644	2,444	23,200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11,448	9,448	2,000	-
사회복지기금	57,519	27,209	30,310	-
노인복지계정	12,155	665	11,490	-
장애인복지계정	21,691	7,291	14,400	-
자활계정	9,160	4,740	4,420	-
주거지원계정	14,512	14,512	-	-
체육진흥기금	55,581	3,259	52,321	-
재난관리기금	1,119,429	779,929	339,500	-
재난계정	980,620	641,120	339,500	-
구호계정	138,809	138,809	-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33,108	33,108	-	-
지역교류협력기금	1,644	1,644	-	-
국제개발협력기금	3,993	3,993	-	-
도시재생기금	81,263	81,263	-	-
관광진흥기금	7,337	2,337	5,000	-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472	1,472	-	-
서울관광플라자계정	5,865	865	5,000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주3)}	5,965	5,965	-	-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주4)}	76,221	76,221	-	-
고향사랑기금	470	470	-	-
공공시설등설치기금	33,204	33,204	-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134	134	-	-

주1)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시행 '25. 9.29)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당초 '25.12.31까지 → 연장 '30.12.31까지

주2)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시행 '25. 9.29)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당초 '25.12.31까지 → 연장 '30.12.31까지

주3)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시행 '25. 9.29)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당초 '25.12.31까지 → 연장 '30.12.31까지

주4)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시행 '25. 9.29)으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당초 '25.12.31까지 → 연장 '30.12.31까지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2 ('26. 4. 9)

-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478억 2,800만원과 당해 회계연도 수입 5조 5,892억 4,700만원을 운용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5조 5,274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1,096억 4,1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기금운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표 3-4〉 2025회계연도 기금 운용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전 이 년 월 도 액 (A)	수 입 액 (B)	지 출 액 (C)	다 음 년 도 이 월 액 (D)	비 고
47,828	5,589,247	5,527,434	109,641	(A+B)=(C+D)

2.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 관련

(1) 수입결산

- 기금에 대한 2025회계연도 당초 수입계획액은 4조 1,789억 1,300만원이나, 결산결과 실제수납액은 5조 5,892억 4,700만원⁴⁾으로 당초 수입계획 보다 33.7%, 1조 4,103억 3,300만원 증가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반영된 수입계획(5조 5,488억 2,100만원)보다 404억 2,600만원⁵⁾ 증가하여 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4) 전년도 이월액 478억 2,800만원 제외

5) 전년도 이월액 478억 2,800만원 제외

〈표 3-5〉 2025회계연도 과목별 수입결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운용계획		수납액 ^{주1)} (B)	당초계획 대비 수납증감액 (C=B-A)	주요증감내역
	당초 (A)	수정			
계	4,178,913	5,548,821	5,589,247	1,410,333	-
전입금	569,492	876,259	873,847	304,355	①자원회수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4억 1,100만원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853억 6,700만원
보조금	-	5,430	5,698	5,698	①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56억 9,800만원
차입금	-	350,000	339,500	339,500	①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395억원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225,942	225,957	276,437	50,495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7억 9,400만원 ②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2억 6,700만원 ③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503억 8,700만원 ④기후대응기금 32억 5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07,970	115,970	115,970	8,000	①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0억원 ②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0억원
예치금회수	1,681,061	2,000,049	2,000,049	318,987	①자원회수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5억 2,500만원 ②도시재생기금 959억 500만원 ③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723억 6,700만원 ④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21억 900만원
예수금	1,332,988	1,707,813	1,697,313	364,325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593억 2,500만원 ②지역교류협력기금 50억원
이자수입	158,890	150,123	149,011	△9,878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81억 7,300만원 ②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62억 5,500만원 ③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4억 8,000만원 ④도시재생기금 12억 8,400만원
기타수입	102,567	117,217	131,417	28,849	①도시재생기금 △115억 6,300만원 ②식품진흥기금 △4억 7,300만원 ③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93억 6,300만원 ③공공시설등설치기금 85억 8,000만원

주1)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25회계연도 당해연도분 실제수납액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중 제2장 기금수입·지출결산 (p.1527~1560)

- **전입금**은 당초 5,694억 9,2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결산결과 3,043억 5,500만원 증가한 8,738억 4,700만원이 실제 수납된 바,
 -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중 기타회계 전입금 2,853억 6,700만원이 순증되었고,⁶⁾ **자원회수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수입계획보다 △24억 1,100만원 감전입된 것으로 확인됨
- **보조금**은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난지원 국고보조금 56억 9,800만원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교부됨에 따라 당초 수입계획 대비 순증하였으며,
- **차입금**은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분담분 3,395억원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모집공채(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순증한 것으로 확인됨
- **융자금회수**는 당초 2,259억 4,2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실제 504억 9,500만원 증가된 2,764억 3,700만원이 수납된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경우,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당초계획보다 △27억 9,400만원이 감수납 되었으며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을 위한 SH공사 융자금 및 이자 회수수입 등이 당초 계획보다 △12억 6,700만원 감수납 되었으나,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에서 조기상환 등 당초 수입계획하지 않은 융자금 상환이 발생되어 당초 수입계획보다 503억 8,700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기후대응기금**의 경우에도 조기상환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32억 5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6)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예치금회수**는 지난 회계연도말까지 지출항목중 예치금에 적립한 여유재원을 다음년도에는 수입과목인 예치금회수로 수입계획하는 것으로써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1조 6,810억 6,100만원을 수입계획 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3,189억 8,700만원 증가한 2조 4,900만원이 실수납된 것으로 제출되었음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당초계획 대비 △15억 2,500만원 감소되었고, **기후대응기금**의 경우에도 당초보다 △5억 7,400만원 감소된 바, 회계연도 개시이후 지난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수입계획한 예치금회수 수입을 감소정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도시재생기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당초보다 959억 500만원 증가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업 용자계정**도 당초보다 723억 6,7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경우에도 당초보다 721억 900만원 증가되는 등 15개 기금, 22개 계정에서 예치금회수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예수금**은 타 회계나 기금에 대한 상황이 전제된 차입재원을 수입항목에 계상한 것으로써 당초 1조 3,329억 8,8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실제 3,643억 2,500만원 증가한 1조 6,973억 1,300만원이 수납된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경우에는 당초 1조 3,329억 8,8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총 4회의 기금운용계획변경중 예수금 수입계획을 2회 변경함으로써 당초보다 3,593억 2,500만원 초과수납 되었으며⁷⁾

- **지역교류협력기금**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 지원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예수받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수입계획보다 50억원이 순증되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7)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2 ('26. 4. 9)

○ **이자수입**은 당초 1,588억 9,0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98억 7,800만원 감소한 1,490억 1,100만원이 실수납된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포함한 13개 기금, 17개 계정에서 이자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71억 8,900만원 감수납 되고,⁸⁾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포함한 10개 기금, 11개 계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이자수입이 73억 1,000만원 초과수납⁹⁾ 된 것으로 확인됨

○ **기타수입**은 당초 1,025억 6,700만원으로 수입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288억 4,900만원 증가한 1,314억 1,700만원이 실수납된 바,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0)에 근거하여 재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기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11)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8)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81억 7,300만원), 통합계정 (△9억 5,800만원)

②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62억 5,500만원)

③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7억 8,100만원)

④체육진흥기금 (△3억 4,900만원)

⑤식품진흥기금 (△1억 7,300만원)

⑥양성평등가족기금 (△1억 5,600만원)

⑦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8,400만원), 자활계정 (△4,600만원), 장애인복지계정 (△2,000만원)

⑧국제개발협력기금 (△7,800만원)

⑨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700만원)

⑩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 (△3,200만원),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200만원)

⑪지역교류협력기금 (△800만원)

⑫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600만원)

⑬고향사랑기금 (△200만원)

9) ①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증 34억 8,000만원)

②도시재생기금 (증 12억 8,400만원)

③공공시설등설치기금 (증 9억 6,400만원)

④도로굴착복구기금 (증 4억 9,100만원)

⑤기후대응기금 (증 4억 800만원)

⑥하수도사업회전기금 (증 3억 700만원)

⑦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증 1억 2,900만원)

⑧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증 1억 600만원), 투자계정 (증 4,100만원)

⑨공무원주거안정기금 (증 9,400만원)

⑩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증 100만원)

1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도시재생일반계정)

① 도시재생일반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이하 생략)

1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징수 부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115억 6,300만원 감수납 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도 과징금 수입 감소로 당초보다 △4억 7,3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나,¹²⁾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경우, 당초 수입계획보다 펀드 투자금이 초과 회수되어 당초보다 93억 6,300만원 증가한 143억 8,500만원이 실수납 되었고,¹³⁾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의 경우에는 '25회계연도중 공공기여금을 연 5회 분할납부 예정이었으나, 사업자가 일시 납부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85억 8,000만원이 초과수납 된 것으로 확인됨¹⁴⁾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2)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2 ('26. 4. 9)

13) 서울특별시, 창업정책과-4741 ('25. 5.16), “'25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심의회 결과보고”

14)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2523 ('25. 3.12), “2025년 제1차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표 3-6〉 2025회계연도 기금별 수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수납률
		당초	수정					
		(A)		(B)	(C=A+B)	(D)	(E)	(F=E/C)
계		4,178,913	5,548,821	47,828	5,596,649	5,642,365	5,637,075	10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16,495	2,783,637	-	2,783,637	2,770,239	2,770,239	99.5
	통합계정	1,569,027	1,949,596	-	1,949,596	1,935,304	1,935,304	99.3
	재정안정화계정	547,467	834,041	-	834,041	834,935	834,935	100.1
중소기업육성기금		420,222	532,861	-	532,861	594,303	589,013	110.5
	융자계정	294,420	377,487	-	377,487	427,093	427,093	113.1
	투자계정	85,192	112,138	-	112,138	117,959	117,959	105.2
	사회적경제계정	40,610	43,235	-	43,235	49,250	43,961	101.7
식품진흥기금		18,231	23,682	-	23,682	22,509	22,509	95.0
기후대응기금		50,146	49,572	4,239	53,811	64,682	64,682	120.2
도로굴착복구기금		63,901	82,571	1,114	83,686	84,673	84,673	101.2
양성평등가족기금		2,088	4,018	106	4,125	3,945	3,945	95.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43,715	42,190	-	42,190	39,745	39,745	94.2
사회복지기금		34,913	45,029	-	45,029	45,627	45,627	101.3
	노인복지계정	1,026	1,162	-	1,162	1,159	1,159	99.7
	장애인복지계정	7,602	9,645	-	9,645	11,251	11,251	116.7
	자활계정	5,249	5,633	-	5,633	5,716	5,716	101.5
	주거지원계정	21,034	28,587	-	28,587	27,499	27,499	96.2
체육진흥기금		14,290	14,968	-	14,968	15,262	15,262	102.0
재난관리기금		1,151,932	1,593,456	41,414	1,634,870	1,633,791	1,633,791	99.9
	재난계정	970,215	1,392,324	41,414	1,433,739	1,425,536	1,425,536	99.4
	구호계정	181,717	201,131	-	201,131	208,255	208,255	103.5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33,564	34,415	-	34,415	34,565	34,565	100.4
지역교류협력기금		2,873	8,752	-	8,752	8,744	8,744	99.9
국제개발협력기금		6,252	7,911	274	8,185	8,106	8,106	99.0
도시재생기금		68,692	164,598	678	165,276	154,997	154,997	93.8
관광진흥기금		2,767	2,890	-	2,890	2,979	2,979	103.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863	1,992	-	1,992	2,114	2,114	106.1
	서울관광플라자계정	903	898	-	898	865	865	96.3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8,501	28,089	-	28,089	27,609	27,609	98.3
하수도사업회전기금		94,532	95,123	-	95,123	95,431	95,431	100.3
고향사랑기금		979	921	-	921	792	792	86.0
공공시설등설치기금		23,740	33,060	-	33,060	33,284	33,284	100.7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1,071	1,071	-	1,071	1,073	1,073	100.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중 제2장 기금수입·지출결산 (p.1527~1560)

(2) 지출결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당초에는 4조 1,789억 1,3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5조 5,488억 2,1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바,
- 전년도이월액(478억 2,800만원)을 포함한 '25회계연도 지출계획현액(5조 5,966억 4,900만원)에 대해 여유재원 예치를 포함하여 5조 5,274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1,096억 4,1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20개 기금, 28개 계정에 대한 지출결산 결과를 제출하였음

〈표 3-7〉 2025회계연도 지출결산 결과 (요약)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B)	지출계획현액 (C=A+B)	지출액 (D)	다음년도이월액 (E)	집행잔액 ^{주1)} (F=C-D-E)
	당초	수정 (A)					
계	4,178,913	5,548,821	47,828	5,596,649	5,527,434	109,641	△40,425
비용자성비	401,146	1,074,512	45,005	1,119,517	853,524	106,800	159,192
용사업성비	266,846	266,986	2,823	269,809	245,891	2,841	21,076
예치금	1,306,300	1,236,281	-	1,236,281	1,505,547	-	△269,266 ^{주2)}
예수금상환	249,717	251,413	-	251,413	249,665	-	1,747
예탁금	1,257,200	1,989,200	-	1,989,200	1,968,200	-	21,000
차입금상환	696,666	704,716	-	704,716	679,614	-	25,101
기본경비	458	566	-	566	438	-	127
인력운영비	170	5,335	-	5,335	4,741	-	594
기타지출	408	19,809	-	19,809	19,809	-	0

주1) 기금은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여유재원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표출되지 않음. 다만, 위 <표>는 세부사업의 지출상황을 일반회계 등에 준하여 설명하고자 집행잔액(혹은 불용, 미집행)을 산출한 것임

주2) 지출계획보다 초과지출되어 △으로 표시되나, 사실상 예치금으로 지출되어 여유재원이 초과 적립된 것을 의미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중 기금운용명세서 (p.1523~1524)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2 ('26. 4. 9)

○ **비용자성사업비**는 지출계획현액 1조 1,195억 1,700만원 중 8,535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1,068억원(지출계획현액 대비 9.5%)을 이월하고, 1,591억 9,2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14.2%)을 미집행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표 3-8〉 기금별 비용자성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주1)} (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E=D/A)
계	131	1,119,517	853,524	106,800	159,192	1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	150,000	150,000	-	-	0.0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3	88,804	71,081	-	17,723	20.0
투자계정	5	85,123	66,223	-	18,900	22.2
사회적경제계정	3	6,151	6,085	-	66	1.1
식품진흥기금	12	1,845	1,806	-	38	2.1
기후대응기금	18	10,205	8,580	1,238	386	3.8
도로굴착복구기금	2	63,253	50,102	211	12,939	20.5
양성평등가족기금	13	1,544	1,491	-	53	3.5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11	34,112	30,296	-	3,815	11.2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5	539	492	-	47	8.8
자활계정	5	573	573	-	-	0.0
주거지원계정	1	8,631	7,464	-	1,166	13.5
체육진흥기금	14	12,182	12,002	-	180	1.5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	443,676	290,431	57,576	95,668	21.6
구호계정	3	75,058	68,842	-	6,216	8.3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1	1,887	1,445	-	441	23.4
지역교류협력기금	10	7,486	7,058	-	428	5.7
국제개발협력기금	13	4,958	3,840	319	798	16.1
도시재생기금	1	89,194	73,730	15,213	250	0.3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3	640	640	-	-	0.0
고향사랑기금	1	329	317	-	11	3.6
공공시설등설치기금	2	32,320	80	32,240	-	0.0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1	1,000	938	-	61	6.2

주1) 세부사업의 지출계획액중 융자성 자원 및 인건비는 제외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중 제2장 기금수입·지출결산 (p.1561~1638)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당초 정책사업인 **재해 및 재난 예방**에 1,247억 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15) 회계연도 개시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과 조례에 근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17)를 통해 정책사업인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한 지출계획을 변경한 바,

- 결산결과, 지출계획현액(4,436억 7,600만원)의 21.6%, 956억 6,8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써, 세부사업인 **재난예방**에서 지출계획현액(4,206억 7,300만원)의 65.2%, 2,743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574억 4,5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해 888억 4,8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표 3-9〉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비용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지출계획현액 (A)	지 출 액 (B)	다 음 년 도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E=D/A)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계	443,676	290,431	57,576	95,668	21.6
	재 난 예 방	420,673	274,379	57,445	88,848	21.1
	응 급 복 구	22,215	15,864	131	6,219	28.0
	연 구 용 역	787	187		600	76.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2 ('26. 4. 9)

15)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중 제2장 기금수입·지출결산 (p.1561~1638)

16)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17)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경우,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지출계획(606억 7,300만원)에서 851억 2,3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바,
- 5개의 세부사업에서 펀드 출자금 지출 감소 사유 등으로 인해 662억 2,300만원을 지출하여, 지출계획현액(851억 2,300만원)의 22.2%, 189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0〉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비융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지출계획현액 (A)	지 출 액 (B)	다 음 년 도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E=D/A)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계	85,123	66,223	-	18,900	22.2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69,679	51,530	-	18,148	26.0
	서울 미래 혁신성장 펀드 조성	13,529	12,871	-	658	4.9
	서울 벤처펀드(미래혁신, Vision 2030) 운영	315	241	-	73	23.3
	녹색창업펀드 제5호 조성	900	880	-	20	2.2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	700	700	-	-	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2 ('26. 4. 9)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경우,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자의 참여 저조 등의 사유로 지출계획현액(18억 8,700만원)의 23.4%, 4억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비융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세 부 사 업	지출계획현액 (A)	지 출 액 (B)	다 음 년 도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E=D/A)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남 북 교 류 협 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	1,887	1,445	-	441	23.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2 ('26. 4. 9)

○ **융자성사업비**는 지출계획현액 2,698억 900만원 중 91.1%, 2,458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4,1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1.1%)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0억 7,600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7.8%)을 미집행한 것으로 제출된 바,

〈표 3-12〉 기금별 융자성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세부사업수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E=D/A)
계	11	269,809	245,891	2,841	21,076	7.8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1	200,000	187,926	-	12,073	6.0
사회적경제계정	1	6,000	5,999	-	-	0.0
식품진흥기금	1	1,500	842	-	658	43.9
기후대응기금	4	26,810	19,608	2,841	4,360	16.3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	7,400	3,950	-	3,449	46.6
자활계정	1	449	399	-	50	11.1
주거지원계정	1	5,650	5,523	-	127	2.2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	22,000	21,642	-	357	1.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중 제2장 기금수입·지출결산 (p.1561~1638)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에 74억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적합한 매물조건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원대상 가구의 계약 포기 발생 및 계약 미체결을 사유로 지출계획현액(74억원)의 46.6%, 34억 4,9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세부사업인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에 당초 15억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최종심사시 지원자의 신청자격 미달로 인한 심사 제외건수가 발생하여 지출계획현액(15억원) 대비 43.9%, 6억 5,8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 **기후대응기금**의 경우, 세부사업중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에서 사업 취소 및 변경건수 발생 등의 사유로 지출계획현액(178억 2,300만원) 대비 24.5%, 43억 6,000만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3〉 기후대응기금 융자성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세부사업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E=D/A)
기후대응기금	계	26,810	19,608	2,841	4,360	16.3
	동북권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사업	1,147	1,147	-	-	0.0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 (2 단 계)	6,840	6,840	-	-	0.0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00	1,000	-	-	0.0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17,823	10,621	2,841	4,360	24.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2 ('26. 4. 9)

- **예치금**은 당초 1조 3,063억원으로 계획하고,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조 2,362억 8,1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실제 1조 5,055억 4,700만원이 지출(예치)된 것으로 제출됨¹⁸⁾

〈표 3-14〉 예치금 계획 대비 지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운용 당초	계 수	지출액 (C)	지출액 - 수정계획 (C-B)
1,306,300	1,236,281	1,505,547	269,266

18)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중 기금운용명세서 (p.1523~1524)

- 결산결과, 예치금이 당초 지출계획보다 초과 지출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보다 실제 세출결산이 초과지출(초과적립)된 것에 해당되나, 기금의 경우,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각 기금 별로 '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에 연동한 결과인 바,
-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여유재원인 세계잉여금을 수입계획에는 예치금회수로 수입처리하고, 지출계획에는 여유재원을 적립 하는 예치금으로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예치금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20억 4,300만원 증가한 22억 3,000만원을 지출계획하였으나,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 및 민간융자금 회수액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이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치금이 초과적립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예치금 지출계획에 반영하고, 연도말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이입하는 등 지출액이 지출계획보다 247억 3,900만원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의 경우에도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및 연도말 집행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지출액이 지출계획보다 794억 1,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기후대응기금**은 회계연도중 정책사업비 지출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18억 6,900만원 감소한 167억 9,100만원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 하였으나, 연도말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이입하면서 지출계획보다 156억 1,800만원 증가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에도 회계연도중 시설비 확대 지출을 위해 당초 계획대비 59억 2,400만원 감소한 204억 1,8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도로굴착사업 감소에 따른 복구물량 감소 등으로 연도말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이입하여 지출계획보다 139억 3,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10일까지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 바,¹⁹⁾ 출납사무가 완결된 이후 각 기금별 예치금 지출계획과 실제 적립액을 비교하면, 2,692억 6,600만원이 초과 적립된 것으로 확인됨²⁰⁾

-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융자계정**과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박물관·미술관소장품구입기금**의 경우, 지출계획보다 예치금이 100% 이상 초과 적립되었고,²¹⁾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 7개 계정은 실제 적립된 예치금이 100억원 이상 초과 적립되었으나,²²⁾

- **도시재생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 7개 계정의 경우에는 지출계획액보다 실제 예치금 적립액이 부족하게 예치된 것으로 확인됨²³⁾

19)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한 세입금은 같은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20)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2 ('26. 4. 9)

21) ①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지출계획보다 226.9%, 50억 6,100만원 초과적립

②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지출계획보다 216.0%, 247억 3,900만원 초과적립

③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은 지출계획보다 112.0%, 7,000만원 초과적립

④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지출계획보다 104.1%, 794억 1,300만원 초과적립

22) ①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지출계획보다 985억 5,900만원(20.3%) 초과적립

②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지출계획보다 794억 1,300만원(104.1%) 초과적립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출계획보다 259억 9,600만원(20.2%) 초과적립

※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은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치금 적립규모에 유동성이 있음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재원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이하 생략)

④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은 지출계획보다 247억 3,900만원(216.0%) 초과적립

⑤ 기후대응기금은 지출계획보다 156억 1,800만원(930.%) 초과적립

⑥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출계획보다 139억 3,600만원(68.3%) 초과적립

⑦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은 지출계획보다 133억 4,100만원(10.6%) 초과적립

○ 예치금이 당초 계획보다 실제 초과(예치) 혹은 부족 적립되는 것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지출계획상 예치금 적립계획 즉, '장부상 계획'을 각 기금별 실제 예치된 재원 즉, '실제 통장잔고'대로 현행화하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인 바,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편성기준」²⁴⁾에 의하면, 당해 연도내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예치금 목에 계상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도말 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 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예치금의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의 불일치 상태를 정비하여 상호 일치시킴으로써 장부상 허수가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반영되는 사례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실익도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 '26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예치금의 지출계획과 '25회계연도말 실제 금고에 예치된 금액과의 차이가 있는 기금(계정포함)은 금번 제336회 정례회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통해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지방기금법」에 의거 의회의 승인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금액 변경이 가능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난관리기금 구**

23) ①고향사랑기금은 지출계획보다 △19.1%, △1억 1,000만원 부족적립
 ②도시재생기금은 지출계획보다 △13.2%, △100억 2,200만원 부족적립
 ③양성평등가족기금은 지출계획보다 △4.8%, △1억 2,200만원 부족적립
 ④식품진흥기금은 지출계획보다 △4.6%, △4억 7,400만원 부족적립
 ⑤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은 지출계획보다 △3.6%, △3,200만원 부족적립
 ⑥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출계획보다 △1.9%, △20억 5,400만원 부족적립
 ⑦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지출계획보다 △1.9%, △1억 1,700만원 부족적립

24)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5. 7), p.311~p.312

호계정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개별 기금(계정포함)의 경우에는 각 기금(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예치금의 '장부상 계획'과 '실제 통장잔고'를 일치시킬 것으로 사료됨

〈표 3-15〉 기금별 예치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금운용계획		지출액 (결산액) (C)	결산액-최종계획 ^{주1)}	
	당초 (A)	최종 (B)		(적립액) ^{주2)} (D=C-B)	(적립률) (E=D/B)
계	1,306,300	1,236,281	1,505,547	269,266	2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0,066	106,977	104,923	△2,054	△1.9
재정안정화계정	570	128,990	154,986	25,996	20.2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4,293	76,258	155,671	79,413	104.1
투자계정	8,954	11,452	36,191	24,739	216.0
사회적경제계정	18,449	21,074	21,868	794	3.8
식품진흥기금	4,922	10,331	9,857	△474	△4.6
기후대응기금	18,660	16,791	32,409	15,618	93.0
도로굴착복구기금	26,320	20,418	34,354	13,936	68.3
양성평등가족기금	958	2,567	2,444	△122	△4.8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8,655	8,077	9,448	1,370	17.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561	619	665	45	7.4
장애인복지계정	187	2,230	7,291	5,061	226.9
자활계정	4,362	4,606	4,740	134	2.9
주거지원계정	6,753	14,306	14,512	205	1.4
체육진흥기금	2,097	2,775	3,259	483	17.4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695,505	484,984	583,543	98,559	20.3
구호계정	175,547	125,468	138,809	13,341	10.6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	31,627	32,478	33,108	629	1.9
지역교류협력기금	734	1,224	1,644	419	34.3
국제개발협력기금	1,706	2,950	3,673	723	24.5
도시재생기금	67,586	76,072	66,049	△10,022	△13.2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218	1,347	1,472	124	9.3
서울관광플라자계정	903	898	865	△32	△3.6
공무원주거안정기금	6,494	6,082	5,965	△117	△1.9
하수도사업회전기금	94,532	75,913	76,221	307	0.4
고향사랑기금	827	581	470	△110	△19.1
공공시설등설치기금	23,740	740	964	224	30.3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63	63	134	70	112.0

※ 주1) 결산액-최종계획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최종계획대비 결산결과를 검토한 것임

주2) 적립액은 최종계획대비 실제 초과적립 되거나, 부족적립된 규모임

○ **예탁금**은 당초 3개 기금(계정)에서 1조 2,572억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에서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²⁵⁾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재원 3,5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지출 계획한 바,

- 총 4개 기금(계정)이 당초 계획을 1조 9,892억원으로 지출계획 변경하고, 1조 9,682억원을 예탁(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예수금원리금상환**의 경우, 당초 2,497억 1,700만원을 지출계획 하고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514억 1,3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최종계획 대비 △17억 4,700만원이 감소된 2,496억 6,500만원이 지출된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당초계획보다 △100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은 당초보다 99억 9,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6〉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감액 (B-A)	증 감 내 역
	당 초 (A)	수 정			
예 탁 금	1,257,200	1,989,200	1,968,200	711,000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715억원 증가 (지출액 1조 6,087억원) ②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395억원 증가 (지출액 3,395억원) ③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증감없음 (지출액 100억원) ④식품진흥기금 증감없음 (지출액 100억원)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249,717	251,413	249,665	△51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0억 7,800만원 감소 (지출액 2,216억 7,600만원) ②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400만원 감소 (지출액 155억 3,800만원) ③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99억 9,200만원 증가 (지출액 124억 1,200만원) ④지역교류협력기금 3,800만원 증가 (지출액 3,800만원)

25)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13982 ('25. 9. 8), “2025년 제1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 **차입금원리금상환**의 경우에는 당초 6,966억 6,6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7,047억 1,6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차입금 상환일정 조정에 따른 상환규모 감소로 당초계획 대비 △170억 5,100만원이 감소된 5,296억 1,400만원을 상환(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 **인력운영비**는 당초 1억 7,0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53억 3,5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47억 4,100만원을 지출한 바,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지난 '24회계연도와 동일하게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는 인력운영비를 지출계획 하지 않았으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의사 집단행동 관련 구급대응 인력 확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출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²⁶⁾ 인력운영비 50억 6,400만원을 순증하는 지출계획을 하여 44억 6,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국제개발협력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정책사업인 **국제교류협력 추진**의 세부사업인 ①**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과정**과 ②**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과정**의 인건비를 당초보다 1억 100만원 증가한 2억 7,100만원을 지출 계획하여²⁷⁾ 2억 7,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²⁸⁾

26) ①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1498 ('25. 1.22), “2025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 재난예방중 기간제근로자보수 : 당초 0 → 변경 16억 4,700만원 (16억 4,700만원 순증)

②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7783 ('25. 5.15), “2025년 제8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 재난예방중 기간제근로자보수 : 당초 16억 4,700만원 → 변경 37억 6,000만원 (21억 1,300만원 증)

③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정책과-15557 ('25. 9.29), “2025년 제15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 재난예방중 기간제근로자보수 : 당초 37억 6,000만원 → 변경 50억 6,400만원 (13억 300만원 증)

27)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1929 ('25. 3. 6), “-2025년도 제1차 국제개발협력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8)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 것으로서 최종계획대비 지출액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381천원)은 미표기함

〈표 3-17〉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출항목	기금운용계획		지출액 (B)	증감액 (B-A)	증감내역
	당초 (A)	수정			
차입금 리금환 상	696,666	704,716	679,614	△17,051	①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70억 5,100만원 감소 (지출액 5,296억 1,400만원) ②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증감없음 (지출액 1,500억원)
인력 운영 비	170	5,335	4,741	4,570	①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44억 6,900만원 증가 (지출액 44억 6,900만원) ②국제개발협력기금 1억 100만원 증가 (지출액 2억 7,100만원)

○ **기본경비**는 당초 4억 5,8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1억 700만원 증가한 5억 6,6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4억 3,800만원을 지출한 바,

- 개별 기금의 심의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개최비용 감소 등의 사유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등에서 실제지출액이 당초 대비 △3,800만원 감소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재원조성 관련한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를 추가 반영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억 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기타지출**은 당초 4억 8,0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94억 100만원 증가한 198억 900만원을 전액 지출한 바,

-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당초 **기타지출**을 계획하지 않았으나, 회계연도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중량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2억 1,000만원을 순증 지출계획하여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경우, 당초 4억 800만원을 지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회계연도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5억 9,9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전액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8〉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A)	증 감 내 역
	당 초 (A)	수 정			
기본경비	458	566	438	△20	①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3,800만원 감소 (지출액 1,100만원) ②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300만원 감소 (지출액 600만원) ③도로굴착복구기금 △1,000만원 감소 (지출액 400만원) ④체육진흥기금 △800만원 감소 (지출액 100만원) ⑤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700만원 감소 (지출액 0.8백만원) ⑥고향사랑기금 △700만원 감소 (지출액 300만원) ⑦도사재생기금 △600만원 감소 (지출액 300만원) ⑧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600만원 감소 (지출액 800만원) ⑨공무원주거안정기금 △500만원 감소 (지출액 100만원) ⑩양성평등가족기금 △300만원 감소 (지출액 900만원) ⑪국제개발협력기금 △300만원 감소 (지출액 100만원) ⑫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300만원 감소 (지출액 700만원) 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300만원 감소 (지출액 200만원) ⑭평생진흥기금 서울관광진흥지원계정 △200만원 감소 (지출액 200만원) ⑮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200만원 감소 (지출액 100만원) ⑯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0만원 감소 (지출액 500만원) ⑰기후대응기금 △100만원 감소 (지출액 300만원) ⑱식품진흥기금 △100만원 감소 (지출액 300만원) ⑲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0.6백만원 감소 (지출액 400만원) ⑳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0.6백만원 감소 (지출액 400만원) ㉑지역교류협력기금 △0.06백만원 감소 (지출액 300만원) ㉒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억 200만원 증가 (지출액 3억 3,400만원) ㉓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400만원 증가 (지출액 1,400만원)
기타지출	408	19,809	19,809	19,401	①하수도사업회전기금 192억 1,000만원 순증 (지출액 192억 1,000만원) ②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억 9,100만원 증가 (지출액 5억 9,900만원)

〈표 3-19〉 2025회계연도 기금별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주1)} (E)	집행률 (F=D/C)
	당초수정 (A)							
계	4,178,913	5,548,821	47,828	5,596,649	5,527,434	109,641	△40,425 ^{주2)}	9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16,495	2,783,637	-	2,783,637	2,770,239	-	13,398	99.5
통합계정	1,569,027	1,949,596	-	1,949,596	1,935,304	-	14,292	99.3
재정안정화계정	547,467	834,041	-	834,041	834,935	-	△893	100.1
중소기업육성기금	420,222	532,861	-	532,861	589,013	-	△56,152	110.5
용자계정	294,420	377,487	-	377,487	427,093	-	△49,606	113.1
투자계정	85,192	112,138	-	112,138	117,959	-	△5,820	105.2
사회적경제계정	40,610	43,235	-	43,235	43,961	-	△725	101.7
식품진흥기금	18,231	23,682	-	23,682	22,509	-	1,172	95.0
기후대응기금	50,146	49,572	4,239	53,811	60,601	4,080	△10,870	112.6
도로굴착복구기금	63,901	82,571	1,114	83,686	84,461	211	△986	100.9
양성평등가족기금	2,088	4,018	106	4,125	3,945	-	179	95.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43,715	42,190	-	42,190	39,745	-	2,444	94.2
사회복지기금	34,913	45,029	-	45,029	45,627	-	△598	101.3
노인복지계정	1,026	1,162	-	1,162	1,159	-	3	99.7
장애인복지계정	7,602	9,645	-	9,645	11,251	-	△1,605	116.6
자활계정	5,249	5,633	-	5,633	5,716	-	△83	101.5
주거지원계정	21,034	28,587	-	28,587	27,499	-	1,087	96.2
체육진흥기금	14,290	14,968	-	14,968	15,262	-	△294	102.0
재난관리기금	1,151,932	1,593,456	41,414	1,634,870	1,576,214	57,576	1,079	96.4
재난계정	970,215	1,392,324	41,414	1,433,739	1,367,959	57,576	8,203	95.4
구호계정	181,717	201,131	-	201,131	208,255	-	△7,124	103.5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33,564	34,415	-	34,415	34,565	-	△149	100.4
지역교류협력기금	2,873	8,752	-	8,752	8,744	-	8	99.9
국제개발협력기금	6,252	7,911	274	8,185	7,787	319	78	95.1
도시재생기금	68,692	164,598	678	165,276	139,783	15,213	10,278	84.6
관광진흥기금	2,767	2,890	-	2,890	2,979	-	△89	103.1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	1,863	1,992	-	1,992	2,114	-	△122	106.1
서울관광플라자계정	903	898	-	898	865	-	32	96.4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8,501	28,089	-	28,089	27,609	-	479	98.3
하수도사업회전기금	94,532	95,123	-	95,123	95,431	-	△307	100.3
고향사랑기금	979	921	-	921	792	-	128	86.0
공공시설등설치기금	23,740	33,060	-	33,060	1,044	32,240	△224	3.2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1,071	1,071	-	1,071	1,073	-	△1	100.2

주1) 기금은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여유재원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표출되지 않음.
다만, 위 <표>는 세부사업의 지출상황을 일반회계 등에 준하여 설명하고자 집행잔액(혹은 불용, 미집행)을 산출한 것임

주2) 지출계획보다 초과지출되어 △으로 표시되나, 사실상 예치금으로 지출되어 여유재원이 초과 적립된 것을 의미함.
(해당 집행잔액표에서, 합계 금액 이하 기금별 집행잔액의 초과지출에 대한 '△' 의미도 위와 같음)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중 제2장 기금수입·지출결산 (p.1561~1638)

3.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하 변경인 경우에 한해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한 바,²⁹⁾
 - '25회계연도에 운용한 20개 기금, 28개 계정 모두 총 79건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³⁰⁾ 이중 17건(6개 기금 8개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³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³²⁾에 따라 각 기금별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 '25회계연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기본경비(지방채 발행 수수료)³³⁾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금(계정)에서 지출계획된 기본경비 2억 3,100만원의 45.2%, 1억 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로 다수 개최되는 경향이 있으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³⁴⁾에 따르

29)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30)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2 ('26. 4. 9)

31)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5. 7), p.304

■ 정책사업비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3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3) 2025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기본경비 지출계획액은 3억 3,500만원, 지출액은 3억 3,400만원임

3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면회의를 통한 기금운용 심의가 이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3-20A〉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회 기 기 금 명	수입·지출계획 주요 변경내용	의결결과	
제 329회 임 시 회 (' 25. 4) ① 지역교류협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자성사업비 편성에 따른 세입·세출 변동사항 반영 - 수입계획 : 예수금 5,000백만원 순증 - 지출계획 : 비용자성사업비(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 5,000백만원 증액 	원안 가결	
제 331회 정 려 회 (' 25. 6)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등 세입·세출 변동사항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10,274백만원 증) 등 297,843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290,299백만원 증액, 차입금원리금상환 7,510백만원 증액 등 	원안 가결
	③ 중소기업육성기금 용 자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및 비용자성사업비 편성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72,368백만원 증) 등 83,068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72,368백만원 증액, 비용자성사업비(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700백만원 증액 등 	원안 가결
	④ 중소기업육성기금 투 자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및 비용자성사업비 편성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12,662백만원 증) 등 26,946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4,246백만원 증액, 비용자성사업비(소상공인 대성장 펀드 조성) 700백만원 순증 등 	원안 가결
	⑤ 식 품 진 흥 기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세입·세출 변동사항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5,450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5,450백만원 증액 	원안 가결
	⑥ 도로굴착복구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및 비용자성사업비 편성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18,671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2,024백만원 감액, 비용자성사업비(도로굴착복구공사) 20,695백만원 증액 등 	원안 가결
	⑦ 양성평등가족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및 비용자성사업비 편성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51백만원 증) 등 1,861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1,776백만원 증액, 비용자성사업비(성평등증진) 85백만원 증액 	원안 가결
	⑧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세입·세출 변동사항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4,043백만원 증), 예탁금원리금회수(△2,000백만원→0, 감) - 지출계획 : 예치금 2,043백만원 증액 	원안 가결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표 3-20B〉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회 기 기 금 명	수입·지출계획 주요 변경내용	의결결과	
제 331회 정례회 ('25.6)	⑨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세입·세출 변동사항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7,553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7,553백만원 증액 	원안 가결
	⑩ 체육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세입·세출 변동사항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677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677백만원 증액 	원안 가결
	⑪ 지역교류협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세입·세출 변동사항에 반영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824백만원 증) 등 879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879백만원 증액 	원안 가결
	⑫ 국제개발협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및 비용자성사업비 편성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1,625백만원 증) 등 1,658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1,358백만원 증액, 비용자성사업비(외국 자정부 문화 등 교류) 300백만원 증액 	원안 가결
	⑬ 도시재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및 비용자성사업비 편성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 95,906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11,148백만원 증액, 비용자성사업비(도시재생반시설 조성) 84,758백만원 증액 	원안 가결
	⑭ 고향사랑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 및 비용자성사업비 편성 - 수입계획 : 예치금회수(△32백만원 감) 등 △58백만원 감액 - 지출계획 : 예치금 △245백만원 감액, 비용자성사업비(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87백만원 증액 등 	원안 가결
	⑮ 공공시설등설치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자성사업비 편성 및 세입·세출 변동사항 반영 - 수입계획 : 기타수입(8,580백만원 증) 등 9,320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치금 △23,000백만원 감액, 비용자성사업비(공공시설등 설치) 32,320백만원 증액 	원안 가결
제 332회 임시회 ('25.9)	⑯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변동사항 반영 - 수입계획 : 예수금 352,400백만원 증액 - 지출계획 : 예탁금 352,400백만원 증액, 예수금원리금상환 △2,000백만원 감액 등 	원안 가결
제 333회 정례회 ('25.12)	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자성사업비 편성 및 세입·세출 변동사항 반영 ○ 수입계획 : 이자수입 △11,269백만원 감액 ○ 지출계획 : 비용자성 사업비(서울교통공사 출자금) 150,000백만원 순증 등 	원안 가결

4. 각 기금의 세부사업별 미집행 현황

(1) 융자성사업 세부사업별 미집행 현황

- '25회계연도 기금결산결과, 5개 기금 8개 계정에서 지출계획된 융자성사업의 집행잔액은 210억 7,600만원으로, 지출계획현액(2,698억 900만원) 대비 7.8%가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은, 지출계획현액(74억원)의 46.6%, 34억 4,900만원이 미집행된 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매물 조건을 물색하기 어려워 계약 체결건수가 저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에서는 지출계획현액(15억원) 대비 43.9%, 6억 5,800만원이 미집행된 바, 융자신청자의 대출 자격미달 등으로 인해 융자신청건수 대비 대출실행이 저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의 중소기업 직접융자는 융자금 2,000억원을 지출계획하여 1,879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120억 7,400만원이 미집행된 바,
 - 지난 '24회계연도에는 대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³⁵⁾ '25회계연도의 경우 경영안정자금 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35) '2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중소기업 직접융자'의 집행잔액은 504억 5,100만원으로, 동 회계연도 지출계획현액(2,150억원) 대비 23.5%가 미집행됨

〈표 3-21〉 기금별 융자성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 금 (세부사업수)	세 부 사 업	지출계 현액 (A)	지출액 (B)	다음년 도월 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E=D/A)
계	11	269,809	245,891	2,841	21,076	7.8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1)	중소기업직접용자	200,000	187,926	-	12,074	6.0
사회적경제계정 (1)	사회적경제기업투용자	6,000	5,999	-	1	0.0
식품진흥기금 (1)	식품위생영업자민간용자지원	1,500	842	-	658	43.9
기후대응기금 (4)	소계	26,810	19,608	2,841	4,360	16.3
	동북권집단에너지공급확대사업	1,147	1,147	-	-	0.0
	노원열원시설안정화사업(2단계)	6,840	6,840	-	-	0.0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용자지원	1,000	1,000	-	-	0.0
	민간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	17,823	10,622	2,841	4,360	24.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	장애인전세주택지원사업	7,400	3,951	-	3,449	46.6
자활계정 (1)	전세점포임대자금용자지원	449	399	-	50	11.1
주거지원계정 (1)	저소득층주택임대보증금용자	5,650	5,523	-	127	2.2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	공무원주택전세금지원	22,000	21,642	-	357	1.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중 제2장 기금수입·지출결산 (p.1561~1638)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2 ('26. 4. 9)

(2) 비용자성사업 세부사업별 미집행 현황

- '25회계연도에는 18개 기금, 23개 계정에서 131개의 비용자성사업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10개의 세부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개의 세부사업은 집행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됨³⁶⁾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세부사업인 **재난예방**의 경우, 자연(사회)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시설비 등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계약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절감 및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해 지출계획현액(4,206억 7,300만원)의 21.1%, 888억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은 '25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출자 조성 및 기초성 펀드 출자금을 반영하고자 2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³⁷⁾ 지출계획현액(696억 7,900만원)의 26.0%, 181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지출 계획 수립당시 예상했던 펀드출자 요청액보다 실제 운용사의 요청액이 낮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의 세부사업인 **어르신 주거지원**은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 운영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지출계획현액(7,200만원) 대비 65.7%, 4,700만원이 미집행된 바, 결산결과 해당사업의 운용규모가 매 회계연도마다 축소되어, 향후에는 임차보증금의 수요와 연동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6)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712 ('26. 4. 9)

37) 서울특별시, 창업정책과-4741 ('25. 5.16), "'25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불용처리된 자원(집행잔액)은 다음년도에 해당 사업예산에 재투입되지 않으나,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치금으로 적립되는 것은 물론 다음년도에 해당 사업의 재원으로 재투입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금은 불용이나 이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자원운용 환경인 바,

- 당해연도에 지출계획한 사업이 사업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기금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시에 가용재원을 모두 확보하여 지출계획하기 보다는 기금조성 취지에 맞게 자원조성에 주력하며 필요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출계획을 가·감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22〉 비융자성 사업중 집행잔액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	세부사업	지출계획 현액 (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E=D/A)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난예방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420,673	274,379	57,445	88,848	21.1
중소기업육성기 투자계정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69,679	51,530	-	18,148	26.0
중소기업육성기 융자계정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86,900	69,213	-	17,686	20.4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62,823	49,701	211	12,910	20.5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2,215	15,864	131	6,219	28.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재해보상	67,227	63,040	-	4,186	6.2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노원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5,393	4,039	-	1,354	25.1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8,631	7,464	-	1,166	13.5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	11,283	10,138	-	1,145	10.1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5,313	4,229	-	1,083	20.4

〈표 3-23〉 비용자성 사업중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	세부사업	지출계획 현액 (A)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주1)} (E=D/A)
국제개발협력기금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400	-	-	400	100.0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연구용역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87	187	-	600	76.2
사회복지기금 노인 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72	24	-	47	65.7
국제개발협력기금	해외 도시철도관계자 초청 교육사업	68	32	-	36	52.8

주1) “집행률 50% 이하”는 “불용률이 50% 이상”과 동일하여 불용률로 산출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2026. 6.19.)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3698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조 6,367억원으로 2024회계연도 말 8조 2,171억 5,800만원에 비하여 1조 4,195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개 기금의 종류 및 연도말 조성액 내역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조 7,330억 8,80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537억 3,200만원
- 식품진흥기금	618억 5,700만원
- 기후대응기금	404억 9,000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345억 6,600만원
- 양성평등가족기금	256억 4,500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14억 4,800만원
- 사회복지기금	575억 2,000만원
- 체육진흥기금	555억 8,100만원
- 재난관리기금	1조 1,194억 2,900만원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331억 800만원
- 지역교류협력기금	16억 4,500만원
- 국제개발협력기금	39억 9,300만원
- 도시재생기금	812억 6,400만원
- 관광진흥기금	73억 3,800만원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9억 6,500만원
- 하수도사업회전기금	762억 2,100만원
- 고향사랑기금	4억 7,100만원
- 공공시설등설치기금	332억 400만원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1억 3,400만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 및 의원의 배우자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라.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감사위원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마.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 작성자 : 재무국 재무과 양해진 (☎ 2133-3239)